

# 서 면 답 변 서

|  |                         |     |                                     |
|--|-------------------------|-----|-------------------------------------|
| 질의위원   | 신 교 선 위원                | 소 속 | 평창군의회                               |
| 답 변 자  | 평 창 군 수<br>(환경복지과장)     | 일 자 | 질의 : 2000년12월12일<br>답변 : 2000년12월 일 |
| 회 의  |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     |                                     |
| <p><b>【질문요지】</b></p> <p>○ 쓰레기 반입료 관련 용평, 보광과의 협약서 내용</p> |                         |     |                                     |
| <p><b>【답변요지】</b></p> <p>○ "평창군 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협약서" 별첨</p>  |                         |     |                                     |

- 평창군 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

# 협 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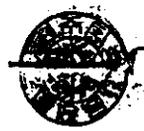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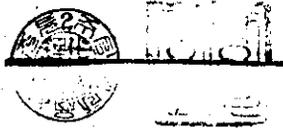
(갑) : 평 창 군



(을) : 주식회사 용평리조트  
대표이사 사장 홍 금



평 창 군



# 협 약 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평창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쌍용양회주식회사 용평리조트(이하 "을"이라 칭한다)간 평창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칭한다)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규모)** 평창군위생매립장 설치규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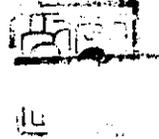
- ①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
- ② 규 모 : 32,000㎡ (용량133,500㎡)
- ③ 사업비 : 5,000백만원 (매립장 안정화 단계 ⇒ 120억원 소요예상)

**제 3 조 (납부금액)**

- ① "을"의 납부금액은 15억원으로 한다.
- ② 납부금은 매년 1월 30일한 "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농협)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는 매립장 사용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 기간은 5년이며 매년 3억원씩, 5회에 걸쳐 분할납부 한다.
- ④ 부담금 미납시는 즉시 반입을 중단한다.

**제 4 조 (운영관리)**

- ① 평창군 위생매립장은 "갑"이 운영·관리 한다.
- ② 반입되는 폐기물은 "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에 한 한다.
- ③ 발생폐기물을 매립장까지의 수거·운반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매립장운영 기간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5. 매립장 반입료는 무료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한다.
6.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자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7.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용기간)

1. 사용기간은 대화위생매립장 준공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2. 협약종료 이후 사용은 현재 공모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후 조성사업비에 대한 납부금액을 재협약 한다.

제 6 조 (협의조정) 본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발생시는 "갑"의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운영관리)의 사항은 위생매립시설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 2 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 한다.

2000 .



"갑" 평 창 군  (인)

"을" 주식회사 용 평 리 조 트  
대표이사 사장 홍 금  (인)

- 평창군 위생매립장 사용에 관한 -

# 협 약 서

(갑) : 평 창 군 수

(을) : 주식회사 보광휘닉스파크

대표이사 백 운 태

평 창 군

# 협약서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평창군(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보광 홀릭스파크(이하 "을"이라 칭한다)간 평창군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칭한다)의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치 및 규모) 평창군위생매립장 설치규모는 다음과 같다.

- ①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번지 일원
- ② 규 모 : 32,000㎡ (용량133,500㎡)
- ③ 사업비 : 5,000백만원 (매립장 안정화 단계 ⇒ 120억원 소요예상)

제 3 조 (납부금액)

- ① "을"의 납부금액은 11억원으로 한다.
- ② 납부금은 매년 1월 30일한 "갑"이 지정하는 거래은행(농협) 구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는 매립장 사용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납부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당해연도에 3억원을 납부하고, 다음 4년간 연2억원씩 분할 납부한다.
- ④ 부당금 미납시는 즉시 반입을 중단한다.

제 4 조 (운영관리)

- ① 평창군 위생매립장은 "갑"이 운영·관리 한다.
- ② 반입되는 폐기물은 "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에 한 한다.
- ③ 발생폐기물을 매립장까지의 수거·운반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④ 매립장운영 기간중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⑤ 매립장 반입료는 무료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한다.

⑥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에 자사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을"은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목별 구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 제 5 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대화위생매립장 준공후 사용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한다.

② 협약종료 이후 사용은 현재 공모중인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후 조성사업비에 대한 납부금액을 재협약 한다.

제 6 조 (협약조정) 본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본계약의 해석상 의견이 발생시는 "갑"의 의견을 원칙으로 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운영관리)의 사항은 위생매립시설 사용개시일로 한다.

제 2 조 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 한다.

2000. 3. 23 .

"갑" 평 창 군 수 (인)

"을" 주식회사 보광 휘닉스파크  
대표이사 백 운 태 (인)

